

- 제48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회기 : 1996. 4. 22 ~ 4. 23 (2일간)

【 2 】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4. 15.

제출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21세기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가칭)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살린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등을 모색하여 「21세기 살기좋은 새양주」의 미래상을 구현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장 1, 부위원장 1)

나. 참여 대상 : 학계, 재계, 의원, 전직 공무원, 일반 군민 등

다. 분과 위원회 : 4 ~ 5개 분과 (지역개발, 복지환경, 지역경제, 행정재정 등)

라. 위원회 운영 : 정기회 (2개월 1회이상), 임시회 (필요시)

마. 위원회의 기능 : 군수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함.

- 양주군의 21세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장기 정책환경의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양주군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기타 참고사항

-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및운영조례 (경기도)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21세기에 대비한 양주군의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양주군장기발전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양주군의 21세기 미래종합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장기정책환경의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양주군의 중·장기발전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임원) ①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위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실장이 된다.

②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발표회 등)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표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특정 과제에 관한 연구의뢰 또는 공동연구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공표) 위원회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안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양주군장기발전계획(제1차) 수립 완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21세기에 대비한 경기도의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경기도의 21세기 미래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기정책환경의 예측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의 중·장기발전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우너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권역별 협의회) 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당해 지역구 출신 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권역별로 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② 협의회는 시군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제3조의 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발표회 등)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표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경기도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특정 과제에 관한 연구의뢰 또는 공동연구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공표) ① 위원회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안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②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내용은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위원과 위원회·발표회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3 】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4. 15.

제출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양주군직제규칙(규칙 제979호, '96. 2. 9 개정)에 의거 업무분장의 변경으로 간사를
를 현실에 맞게 하고자 함.